

국외 유관기관과의 기술협력 협정체결 등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

1. 목 적

- 몽골 노동사회보장부(MLSP) 설립 6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「국가산업안전보건포럼」 기조연설
- 2019년 만료되는 몽골 노동사회보장부(MLSP*) 및 국가전문감독원(GASI**)과의 기술협력 협정 연장 체결을 통한 향후 협력 기반 유지
 - * MLSP :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,
 - ** GASI : General Agency for Specialized Investigation
 - ※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및 국가전문감독원 최근 5년간 교류현황 : 【덧붙임1】
- 중국 산업안전보건협회(COSHA)와의 기술협력 협정체결 등 향후 양 기관 간 협력 방안 협의
- 국외 진출 한국기업의 안전관련 애로사항 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 등

2. 출장개요

- 출장기간 : 2019. 5. 15.(수) ~ 5. 22.(수) 【7박 8일】
- 출 장 지 : 중국(북경) 및 몽골(울란바토르)
- 출 장 자 : 3명
 - 경영이사 이 철 우
 - 국제협력센터 소장 권 중 규
 - 국제협력센터 차장 차 중 철

출장자	주 요 역 할
경영이사 이철우	○ 몽골 노동사회보장부(MLSP) 협정 연장체결 ○ 「국가산업안전보건포럼」 기조연설 ○ 몽골 국가전문감독원(GASI) 협정 연장체결 ○ 중국 안전보건협회(COSHA) 협력협정 체결 등 협의
국제협력센터소장 전문직 2급 권중규	○ 몽골 노동사회보장부(MLSP) 협정 연장체결 ○ 몽골 국가전문감독원(GASI) 협정 연장체결 ○ 중국 안전보건협회(COSHA) 협력협정 체결 등 협의
국제 협력센터 전문직 3급 차중철	○ 몽골 노동사회보장부(MLSP) 및 국가전문감독원(GASI), 중국 산업안전보건협회(COSHA) 협정체결 등 협력사업 협의, 중국 진출 한국기업 안전 관련 현황 파악 등 - 몽골 MLSP 및 GASI : 2019년 협력사업 협의 - 중국 COSHA : 제34차 APOSHO 연차총회 및 IOHA 2020 홍보 등

3. 주요일정

일 시	수행내용	비 고
2019. 5. 15.(수)	○ 출 국 (인천 → 북경)	
2019. 5. 16.(목)	○ 중국 산업안전보건협회(COSHA) 기술협력 협정 체결 등 협력방안 협의	
2019. 5. 17.(금)	○ 중국 진출 한국기업(북경 현대 등) 방문	
2019. 5. 18.(토)-19.(일)	○ 이 동 (북경 → 울란바토르) ○ 포럼 기조연설 및 협정 연장체결 준비 등	
2019. 5. 20.(월)	○ 「국가산업안전보건포럼」 기조연설 ○ 노동사회보장부(MLSP) 협정 연장체결 및 협력방안 협의	
2019. 5. 21.(화)	○ 국가전문감독원(GASI) 협정 연장체결 및 협력방안 협의	
2019. 5. 22.(수)	○ 귀 국 (울란바토르 → 인천)	

* 상기 일정은 항공편 및 현지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

4. 중점 수행사항

○ 중국 산업안전보건협회(COSHA) 협력사업 협의

- 일 시 : 2019. 5. 16.(목) 10:00~14:00
- 장 소 : 중국 산업안전보건협회 회의장
- 참 석 자 : 공단(이철우 이사 등 3명), 중국(Mr. Wang De Xue 회장 등 3명)
- 주요내용 : 양 기관 협력협정 체결, 제34차 APOSHO 연차총회 개최, 중국 산업안전보건 제도집 발간 관련 자료 요청, IOHA 2020 참가 요청 등

※ 중국 산업안전보건협회(COSHA) 기관현황 : 【덧붙임4】

○ 중국 진출 한국기업 방문 협의

- 일 시 : 2019. 5. 17.(금) 10:00~12:00
- 장 소 : 북경 현대 등
- 참 석 자 : 공단(이철우 이사 등 3명), 베이징 현대 관계자
- 주요내용 : 중국 재난대응부(前 SAWS, 사업장 안전 담당) 협정 연장 체결 예정에 따라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안전 관련 애로사항 파악, 지원방안 강구 및 협정 연장체결시 관련사항 협의 추진 등

※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.

○ 몽골 노동사회보장부(MLSP) 관련

-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주관 「국가 산업안전보건 포럼」 기조연설

· 일 시 : 2019. 5. 20.(월) 09:30~14:00

· 장 소 : 몽골 의회(Government House)

※ 몽골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명 참석 예정

-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기술협력 협정 연장체결 및 협력방안 협의

· 일 시 : 2019. 5. 20.(월) 14:00~18:00

· 장 소 :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차관실

· 서 명 자 : 공단(이철우 이사), 몽골(Ms. Mungunchimeg Sanjaa 차관)

※ MLSP 기관 현황 【덧붙임2】

○ 몽골 국가전문감독원 기술협력 협정 연장체결 및 협력사업 협의

- 일 시 : 2019. 5. 21.(화) 10:00~15:00

- 장 소 : 몽골 국가전문감독원(GASI) 원장실

- 서 명 자 : 공단(이철우 이사), 몽골(Mr. Namsarai Tsagaankhuu 원장)

※ GASI 기관 현황 【덧붙임3】

5. 행정사항

○ 동 출장은 2019년도 국제협력센터 사업계획 중 「국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중 안전보건 전문기관과의 교류 등을 통한 재해예방 역량 강화」 사업으로 추진

○ 여비규칙 제23조(여비의 조정)에 따라 동행한 상급자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급 적용

※ 임원 수행 등을 위해 동일 목적 및 동행하여 사업을 수행하므로 상급자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급을 적용

○ 국외출장을 위한 국내운임은 소속부서 국내여비로 처리

- 울산↔인천공항 이동 운임 및 국내 숙박비는 국내여비 기준으로 지급

- 국외유관기관 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「공직자 선물신고제도」에 따라 처리

※ 선물신고안내문 : 【덧붙임 5】

- 항공좌석 만석으로 마일리지를 활용한 보너스 항공권 구매 불가

【덧붙임1】

몽골 노동사회보장부 및 국가전문감독원 교류현황

□ 몽골 노동사회보장부

	연 도	분 야	내 용	출장자
1	2014	기술자문	몽골 정책자문사업 사전실무회의	국제협력팀 직원 등
2		기술자문	몽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책자문사업	협력지원실 국제협력팀 직원 등 5명
3		기술자문	정책자문사업 이행협정 체결	임영섭 기획이사
4		기술자문	산안법 개정을 위한 몽골 정책자문사업	국제협력팀 직원 등 2명
5	2015	기술자문	몽골 정책자문사업 사전실무회의 및 세미나 참가	국제협력팀 직원 등 2명
6		기술자문	몽골 건설안전분야 워크숍 주제발표 및 건설안전 정책 등 기술자문	경기남부지사 김국성 과장
7		국내연수	몽골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 정책수립 및 역량강화	몽골 노동부 공무원 8명 등 15명
8		기술자문	몽골 정책자문사업 세미나 개최	경영기획실장 등 7명
9		기술자문	몽골 정책자문사업 전문가 파견 및 자문	교육원장 등 4명
10		국내방문	몽골 산업안전보건 기준개정 정책권고 설명회 개최	몽골 노동부 7명
11	2016	초청연수	산업안전보건분야 초청연수	몽골 노동부 15명
12	2018	기술자문	산업안전보건 분야 발전전략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체계, 사격인정에 관한 발표 실시	교육원장 등 2명

※ 이동안전보건교육 버스 지원(2011)

□ 국가전문감독원

	연 도	분 야	내 용	출장자
1	2014	기술자문	몽골 협력사업 현지 기술자문 실시	건설재해예방실 건설지원팀 김판기 차장
2		초청연수	한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 정책, 경험 및 기술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재해예방기법을 전수	몽골 GASI 감독관 11명
3		기술자문	몽골 건설안전 및 화학물질 관리 현지기술자문	화학물질관리팀 김현옥 차장 등 2명
4	2015	자료제공	안전보건 기술자료 제공 포스터 2종 10,000부 스티커 3종 10,000부	-
5		공단방문	한-몽 기술협력협정체결에 따른 상호협력 강화방안 논의	노동사회복지감독국장 등 8명
6		기술자문	건설분야 산업재해 발생원인 및 재해예방 활동 워크숍 발표	대구지역본부 이일남 차장
7	2016	초청연수	몽골 산업재해조사 수준향상 초청연수	GASI 공무원 10명
8	2017	기술자문	몽골 건설안전 기술력향상을 위한 한국 우수사례 발표 및 현장 기술지원 실시 등	대구지역본부 김호주 부장
9	2018	기술자문	한국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제도 안전보건활동 등의 정책 전파	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안병준 본부장 등 2명
10		자료제공	안전보건 기술자료 제공 포스터 5종 10,000부 스티커 5종 20,000부	-

※ 이동안전보건교육 버스 지원(2013)

【덧붙임2】

몽골 노동사회보장부(MLSP)

(MLSP :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)

1 . 설립년도 : 1959년(설립 60주년)

- 몽골은 국가 선거결과에 따라 정권이 바뀌면 정부부처가 폐지 또는 신설되는 특성이 있으며, 관련 영향으로 몽골의 노동부는 과거 2회 폐지됨
 - 1차 폐지 : 1987년, 2차 폐지 1997년 / 국장급 이상 모든 공무원 경질

2 . 조직(인원) : 8국 12과(120명)

- ※ 노동관련 법·정책 수립을 주업무로 하고, 근로·산업안전보건 감독은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(국가전문감독기관)
- ※ 차관(협정서명자) : Ms. Mungunchimeg Sanjaa

3 . 주요기능

- 노동보호, 실업대책, 빈곤탈피, 노동조건, 임금, 사회보험, 사회복지, 노동관계의 조정 등

4 . 주요업무

- 노동조건·노동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법률 이행 감독
- 노동조건에 관한 조사와 결정
- 산업안전보건 정책, 여성·아동노동자 보호 및 ILO 협약의 집행과 감독
- 사회복지 관련 각종 기금 및 자금의 확립과 사용감독
-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국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자료 수집·배포
 -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, 조사, 배포

【덧붙임3】

몽골 국가전문감독원(GASI)

(GASI : General Agency for Specialized Inspection)

1 . 설립년도 : 2003년

2 . 기관성격

-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7개 정부부처의 검사 감독업무를 통하여 실행하고 있는 감독 전문기구

2 . 조직(인원) : 7국 8과(1,400여명)

- ※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담당하는 인력은 100여명 정도임
- ※ 원장(협정서명자) : Mr. Namsarai Tsagaankhuu

3 . 주요기능

- 정부 부처의 모든 감독업무 수행

4 . 주요업무

- 노동 및 사회복지 관련 감독(근로 · 노동위생 · 사회복지 등)
- 보건, 교육 및 문화 관련 감독(위생 · 의료 · 교육 등)
- 사회기반시설 감독(건설 · 도로 · 에너지 · 정보기술 · 교통 등)
- 식품 및 농산품 감독(식품 · 동물 · 농작물)
- 환경, 지질 및 광산 감독
- 검역
- 원자력 감독(원자력 · 방사선)

【덧붙임4】

중국 산업안전보건협회(COSHA)

(COSHA : Chin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ssociation)

1 . 설립목적

- 안전보건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교육훈련 및 해결방안을 제공하여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

2 . 기관성격

- 중국 직업안전생산관리감독총국(前 SAWS, 現 재난관리부)의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기관으로 사무국이 감독기관내에 설치

3 . 조직구성 : 1개 본부, 4개 지회(분야별)로 구성

- ※ 1개 본부(비서처본부) : 운영지원부 역할
- ※ 지회 : 분회(전공별 지부), 전공별 위원회, 전문가 위원회, 직업위원회

4 . 사업분야

- 국가 직업안전보건, 안전생산 및 과학기술 개발전략 자문
- 안전보호, 안전공학 및 기술산업 촉진
- 산업안전 연구 수행
- 산업안전 간행물 「안전중국 과학저널」 발간, 국제협력
- 지역사회 안전증진, 안전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, 안전보건교육
- 정부부처 위탁업무 수행
-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자 안전이익 보호, 기술중재 등

【덧붙임5】

선물신고 안내문

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·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제도개요

- 근 거 : 공직자윤리법 제15조~제16조, 동법시행령 제28조~제30조
- 신고의무자 :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(가족포함)
- 대상 선물 :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(단체포함)으로부터 받은 선물

□ 신고요령(절차)

선물받은 공직자

↓ (신고서 제출)

안전보건공단
(감사실)

↓ (이관)

고용노동부장관

↓ (재이관)

인사혁신처장

-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
- 해당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(미화 100달러)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(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)를 작성하여 **감사실로 제출**
 - * 시장가액을 알 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(필요시 소속 기관 윤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)

- 시장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: 즉시 신고 접수
-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: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7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 접수
 - * 선물수령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선물접수대장(붙임 4)에 기록·유지
 - *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·유지 가능
-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관
 - * 선물관리대장(붙임 5)에 기록·유지
 - * 선물이관 시 선물수령 신고서, 선물 사진, 규격서 등 첨부

- 이관 받은 선물을 인사혁신처로 재이관

- 선물의 재이관, 처분 등 사후관리

□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

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